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3-13호
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폭설 피해 주민에 대한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수수료 면제 등 특별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23년 1월 12일 우정사업본부장

'폭설' 피해 특별재난 선포지역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특별지원 대책

1. 지원대상 : 특별재난 추가 선포지역 우체국금융고객

특별재난 선포지역 (1개 지자체)		
전북	순창군	쌍치면

2.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

- 가. 우체국예금 취급(타행계좌송금, 통장 재발행, ATM 현금인출) 수수료 면제
 - ㅇ 면제기간 : '23. 1. 12.(목) ~ '23. 7. 31.(월) [약 6개월]
 - ※ 인터넷·스마트뱅킹, ATM은 '23.1.13.(금) ~ '23.7.31(월) 면제
 - ※ ATM은 선포지역 우체국기기에서 우체국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(타행카드·타행기기를 이용한 경우는 제외)
 - ※ 우체국계좌 보유고객에 한함
- 나. 우체국보험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유예/사고보험금 신속지급
 - ㅇ 접수기간 : '23. 1. 12.(목) ~ '23. 3. 31.(금)
 - ㅇ 유예기간 : '23. 1. 12.(목) ~ '23. 7. 31.(월) [약 6개월]
 - o 유예기간 경과 후 납입방법 : '23. 8월 ~ '24. 1월 중 분할 또는 일시 납입

3. 접수방법

- 가. 구비서류
 - ㅇ 우체국예금 고객
 - 신분증(실명확인증표)
 - * 타행계좌 송금, 통장 재발행 시 고객정보에 등록된 자택주소로 면제대상 확인
 - ㅇ 우체국보험 고객
 - 보험료(환급금대출이자) 납입유예 신청서(우체국 비치)
 - 신분증 및 시청, 읍·면·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)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

나. 접수처 : 전국 우체국